

#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 
번호

2845

제출년월일 : 2016.6.9.
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「건축법 시행령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취지에 맞게 정비 및 「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」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완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

### 가.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대상 신설(안 조례 제4조)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6조의2(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) 개정으로 추가 신설

### 나.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 미관지구 내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 삭제 및 도시미관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심의 대상 신설(안 조례 제8조)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‘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’이 삭제됨에 따라 조항에서 삭제
-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의 경관 등을 위하여 ‘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(공업지역 및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)’에 대하여 신설

### 다. 소위원회 운영사항 변경(안 조례 제11조)

- 소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디자인 등 분야별 위원 추가 및 강화로 소위원회의 운영에 신뢰도 향상
-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 신설된 심의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운영

### 라. 가설건축물 중복 조항 삭제(안 조례 제20조)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(가설건축물) 개정으로 인용조문 수정 및 현 건축 조례의 가설건축물 대상 중복 사항 삭제

**마.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신설(안 조례 제23조의1)**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3조의7조(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신설 (2014.11.28.) 되어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·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조례 신설

**바.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인용조문 정비**

(안 조례 제1조, 제4조의2, 제6조, 제30조, 제32조)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조문 및 인용조문 불일치 정비

「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」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

**사.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적용의 완화(안 조례 제3조)**

-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5조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및 높이의 완화 범위 추가

**개정조례안 : 불임1**

**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2**

**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3**

**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**

**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**

**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있음, 불임4**

○ 입법예고 : 2016. 4. 28. ~ 2016. 5. 18. (20일간)

**기타 참고사항**

○ 현행조례 : 불임5

○ 방침결정문 : 불임6

## < 블임 1 >

#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건축법시행규칙」” 을 「건축법시행규칙」과 관계법령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시장”을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,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」별표 9에 따른다.

1. 「건축법」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: 100분의 115이하
2. 「건축법」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: 100분의 115 이하

제4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
6.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

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6조의3제2항”을 “영 제6조의4제2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100명 이하의 위원으로”를 “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(다만, 공업지역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)

제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

제한다.

2.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  - 가.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의 평면, 용도의 변경
  - 나. 1미터 이내의 건축물 위치변경 또는 조경시설 배치변경 등 경미한 변경

제11조제1항 중 “7인 이상 9인 이내의”를 “7명 이상 11명 이하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.

1.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

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15조제5항제14호”를 “영 제15조제5항제16호”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.

제2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1(안산시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영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안산시 주택관리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두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
  2. 누전 및 누수 점검 방법
  3. 간단한 보수 및 수리 지원
  4. 건축물의 유지·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
  5. 건축물의 개량·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
  6.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·보수에 관한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1. 센터장은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.
  2. 구성원은 건축 관련 부서 공무원과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하며,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업무 수행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0조제1항 중 “영 제81조제1항제2호”를 “영 제81조제1항제3호”로 한다.

제3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“영 제86조제2항”을 “영 제86조제3

항” 으로, “영 제86조제2항제1호” 를 “영 제86조제3항제1호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” 을 “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 항 중 “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” 을 “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” 을 “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” 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건축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건축과장 김 경 수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건축행정계장 변 성 육
	담당자 성명·전화	전효진 (행정 2916)

< 불임 2 >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「건축법」, 「건축법시행령」 및 「건축법시행규칙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----- -- 「건축법시행규칙」과 관계법령----- ----- -----</p>
<p><b>제3조(적용의 완화)</b></p> <p>① 「건축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 제1항에 따라 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<u>시장에게</u>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b>제3조(적용의 완화)</b>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안산시장</u>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----- 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,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」별표 9에 따른다.</p> <p>1. 「건축법」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: 100분의 115이하 2. 「건축법」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: 100분의 115 이하</p>
<p><b>제4조(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)</b></p> <p>① 법령의 제·개정 또는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b>제4조(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)</b>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6.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</p>

현 행	개 정 안
② (생략)	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② (현행과 같음)
<b>제4조의2(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)</b>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한다. 다만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. 1. ~ 3. (생략)	<b>제4조의2(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)</b> --- ----- 영 제6조의4제2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
<b>제6조(구성)</b>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~ ⑦ (생략)	<b>제6조(구성)</b> ① ----- -----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----- ② ~ ⑦ (현행과 같음)
<b>제8조(기능)</b> ① 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미관지구 안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(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)에 관한 사항(다만, 경관위원회와 공동심의한 공용건축물 및 외장의 변경이 없는 대수선의 경우는 제외한다) 2. ~ 4. (생략) ②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 1. 15미터 이하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	<b>제8조(기능)</b> ① ----- ----- ----- 1.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(다만, 공업지역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)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삭제>

현 행	개 정 안
<p>상에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49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</p> <p>2.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의 평면, 용도의 변경 또는 도로면을 제외한 측면, 배면의 입면변경</p> <p>3. 1미터 이내의 건축물 위치변경 또는 조경시설 배치변경 등 경미한 변경</p> <p>4. ~ 6. (생략)</p>	<p>2.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</p> <p>가.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의 평면, 용도의 변경</p> <p>나. 1미터 이내의 건축물 위치변경 또는 조경시설 배치변경 등 경미한 변경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1조(소위원회)</b>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제8조제1항제1호의 미관지구 안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(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)에 관한 사항 (다만,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제외)</p> <p>2.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 상에 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</p> <p>3. (생략)</p>	<p><b>제11조(소위원회)</b> ① ----- ----- 7명 이상 11명 이하의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1.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20조(가설건축물)</b> ① (생략)</p> <p>②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콘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야외흡연실</p> <p>③ (생략)</p>	<p><b>제20조(가설건축물)</b> ① (현행과 같음)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&lt;삭제&gt; 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설&gt;</u>	<p><b>제23조의1(안산시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</b> ① 영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안산시 주택관리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두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</u></li> <li><u>2. 누전 및 누수 점검 방법</u></li> <li><u>3. 간단한 보수 및 수리 지원</u></li> <li><u>4. 건축물의 유지·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</u></li> <li><u>5. 건축물의 개량·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</u></li> <li><u>6. 그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·보수에 관한 사항</u></li> </ol> <p>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센터장은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.</u></li> <li><u>2. 구성원은 건축 관련 부서 공무원과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하며,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.</u></li> <li><u>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업무 수행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li> </ol>
<p><b>제30조(맞벽건축)</b>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<b>제30조(맞벽건축)</b>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2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</b> ①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<b>제32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	<u>&lt;삭제&gt;</u>
③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일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	③ 영 제86조제3항 ----- ----- ----- -----
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.5배(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25배) 이상으로 거리를 띠어 전축할 수 있다.	영 제86조제3항제1호 ----- ----- ----- -----
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.4배(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2배) 이상으로 거리를 띠어야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.5배(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25배) 이상으로 거리를 띠어 전축할 수 있다.	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----- ----- ----- -----
⑥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시장이 시장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로 한다.	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----- ----- ----- -----
⑦(생략)	⑥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	⑦(현행과 같음)

#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2845
--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6년 7월 6일  
제 안 자 : 도시환경위원장

## □ 수정이유

- 안 제4조(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) 제1항제5호를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6조의2 규정에 적합하게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을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- 안 제4조(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) 제1항제5호 ‘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’에서 ‘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’로 수정함.

# **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제5호 중 “개축 또는 수선” 을 “개축” 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## □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